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 8.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0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8. 19.
- 라. 회부일자 : 2020. 8. 19.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추진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비예산
- 다. 합의기관 : 해당없음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국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 8. 19.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 국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19. 8. 6.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른 자치 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 되었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발 맞춰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성과 정도에 따른 우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 책임 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서울시 조례 추진 자치구 현황 1부.
3. 관련법령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감사담당관 조은아
연 락 처	2627-1173

붙임2**서울시 조례 추진 자치구 현황**

연번	자치구명	비 고
1	강북구	
2	강서구	
3	관악구	
4	광진구	
5	구로구	
6	노원구	
7	도봉구	
8	동대문구	
9	동작구	
10	마포구	
11	서대문구	
12	성동구	
13	양천구	
14	영등포구	
15	용산구	
16	은평구	
17	종로구	
18	중구	
19	중랑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